

무단방치자동차 강제처리(폐차) 공고 및 이해관계인 권리행사 통보

영동군 관내에 무단방치 된 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 제26조 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6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강제처리 하고자 공고하오니, 차량 소유자(점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기간 내 권리행사 하시기 바라며, 이행하지 않을 시 강제처리(폐차) 됨을 공고합니다.

2025년 3월 18일

영 동 군



1. 공고기간 : 2025. 03. 18. ~ 04. 17.(30일간)
2. 강제처리 시기 : 공고기간 만료 이후(2025년 4월 18일 이후)
3. 차량보관 장소 : 가가자동차해체재활용산업 (☎ 043-745-6767)
충북 영동군 심천면 난계로 231-69

4. 강제처리(폐차)대상차량 : 59도9689(로체, 유한회사 폴리**)
5. 이해관계인(압류)대상 : 붙임 참조

6. 공고내용

가. 차량 소유자(점유자)께서는 본 공고기간 만료일까지 자진처리(자진회수 또는 폐차)하시기 바라며, 기한 내에 이행치 않을 경우 해당 차량에 대한 모든 권리를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자동차관리법」 제26조 제3항에 따라 강제처리(폐차) 됩니다.

나. 무단방치 행위자에게는 「자동차관리법」 제85조 및 제86조에 따라 범칙금(100만원 이하)이 부과되며, 이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관할지방검찰청으로 송치되어 같은 법 제81조에 따라 형사처벌(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됩니다.

다. 압류 및 저당권자 등 이해관계인은 권리행사에 필요한 대체압류 등 조치 바라며, 기한 내에 권리행사가 없는 경우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여 강제처리(폐차) 됨을 알려 드립니다.

라. 자동차에 적재된 물품(비품)은 폐차와 함께 처분됨을 알려드립니다.

7.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른 강제처리예고통지, 권리행사 통보 등의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는 본 공고문으로 갈음합니다.
8. 기타 문의사항은 영동군 건설교통과 (☎043-740-3512)로 문의 바랍니다.